

서울특별시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57
----------	------

2016. 12. 2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6. 8. 12.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2016. 8. 16 회부)

2. 제안이유

가. 수립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수립배경

- 2011년 수립된 제2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대하여 그간 변화된 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2016년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다. 목 적

- 사람 중심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으로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하여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 도시디자인 조례 제2조

- 도시공간의 보전·개선 위해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시설물의 배치·형태·윤곽·색채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

나. 대상 : 도시디자인 조례 별표

- 사회기반시설 : 도로시설물, 도시철도시설, 하천시설물 등
- 기타 시설물 : 가로녹지시설, 교통관련시설, 도로점용허가시설 등

다. 추진방향

- 디자인사업 위주에서 디자인 관리 절차의 개선
- 성과중심에서 생활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주체의 기준 명확화
-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및 공공의 전문성 강화

라. 중점 추진내용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도시디자인 개념 정립: 국내외 도시디자인 정의 및 정책 조사
- 도시디자인 매뉴얼 사례 분석 : 국외 도시디자인 매뉴얼 사례 분석, 선진도시 트렌드 분석
- 도시 정체성 연구 : 서울시 도시 정체성 관련 논문, 연구 보고서 검토 (서울시 길의 장소성, 도시형성 변천과정 등)
- 관련법 및 상위정책 :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공공디자인 진흥법, 경관법, 건축기본법 등
- 서울시 관련 계획 및 정책 : 1,2차 기본계획 성과, 서울시 주요 업무보고, 자치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분석

○ 비전과 목표

- 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체계

계획의 개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서울 도시디자인 개념 및 범위		
	-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도시디자인의 정의 - 서울 도시디자인 계획의 범위		
여건변화 및 현황	관련 법 및 조례 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도시디자인 현황 및 전망	방향성 도출
	- 서울 도시디자인 조례 분석 - 관련 법령간 위계 정립	- 서울 비전 2030 계획 분석 - 각 살구 마스터플랜 분석	- 국외 도시디자인 정책 추진 - 서울 디자인사업 문제점 분석	- 디자인 행정 체계 개선 - 시주도 사업의 지속가능성 부제
비전 및 기본방향	서울 도시디자인 비전	서울 도시디자인 목표	도시디자인 10원칙	권역별 분야별 기본 방향
	- 3차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비전 수립	-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 수립	- 도시디자인 기본10원칙 수립	
추진단계별 과제 제시	도시디자인 추진 5단계	우선과제 제시 (5항목)		
	- 추진단계별 과제 제시			
실행계획	단계별 추진 계획	시범사업 추진계획	실행체계 정립	
	- 연차별 추진 계획 수립	- 자치구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관리 및 추진 체계 구축	

- 3차 서울 도시디자인 비전

비전	<p>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품질 향상 프로세스 개선</p> <p>"역사, 문화, 사람중심 서울, 도시디자인을 통한 구현"</p> <p>1~2차의 우수한 기본개념 및 거점계획등을 본 3차에서는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과정에 대한 연구 진행</p>		
전략	<p>함께(소통)하는 도시디자인을 통한 사람중심 도시</p>		
목표	<p>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도시디자인</p> <p>차량우선의 도시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변화 도모</p>	<p>역사문화의 개성있는 디자인도시</p> <p>한양도성, 건축자산의 지역 정체성을 보존하고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도시 추구</p>	<p>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디자인</p> <p>누구나 도시공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도시공간 조성</p>
실행전략	<p>지역의 니즈의 사업화를 위한 체계 수립</p> <p>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대상지와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시행</p>	<p>협의 및 수행체계 정립을 통한 지속력 강화</p> <p>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협의, 자문 등 다양한 협의 체계의 시각화를 통해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사업 시행체계 자료 구축</p>	<p>지역자산을 활용한 사업 발굴로 정체성 강화</p> <p>지역의 유무형적 자산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조사 자료로 활용</p>

○ 단계별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전략			
	1	2	3	
1. 도시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거리 조성	도시와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이해하는 단계가 되는 "가져야 남는 거리조성"	지역의 특성이 살아있는 서울사람의 특색있는 통일된 거리환경 조성	거리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한 디자인 방안 제공	거리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디자인계획
2. 다양한 공공생활을 지원하는 외부공간 조성	거리를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 커뮤니티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시간을 보낼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넓은 차선, 사용성이 낮은 거리를 사용 가능한 영역으로 활용	보행자의 오픈스페이스 사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보도설계	공유도시 설계를 통한 공유촉진 법적 제정
3. 상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	상업활성화를 위한 보행로와의 연결성 강화,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상업지의 쇼핑객과 보행자들을 위한 주차공간 및 보도설계	적절한 보행자 교통을 유지한 기업의 상업활동 장려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4. 사용성을 중시하는 외부공간 조성	사람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을 위한 서울시생활환경 조성	상대적으로 소음이 없고 시각공해가 없는 조용한거리 환경 조성	모든 사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거리환경 조성	보행자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차량의 속도저감을 유도하는 공공공간 계획
5.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공공공간 구성	보행자상해를 최소화하고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의 활동을 지원 할수 있는 공간 조성	보행자의 활동을 돕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	포켓파크와 같은 커뮤니티 공간제공	공원과 연결된 레크리에이션 및 커뮤니티 센터를 통한 거리 개선
6.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는 거리 조성	보행자의 안전과 높은 수준의 보안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보행자의 편안한 보행과 횡단을 위한 거리환경 지원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제어장치 마련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 지원 프로그램 마련
7. 공간적 맥락을 유지하고 이동 연결성 향상	주요 목적지사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성 향상	개방적인 거리환경 제공	교통거점과 거리의 연결성 강조한 네트워크 구축	공공시설물의 통일성 부여
8. 공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강화	녹색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시의 장기적 생태 가능 강화	빛물 투수가 유려하고 생태 공간이 유지되는 거리조성	한강 생태기능 복원을 통한 도시 내 자연환경 회복	에너지 소비비용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재료의 사용
9.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 조성	모든 인구(교통약자 포함)를 고려하여 목적지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	안전디자인 원칙에 따른 보행자를 위한 프로젝트	공공장소에서 보행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적제어장치 마련	지속적인 접근성 유지를 위한 도시의 건설기준 설정
10. 다양한 외부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	서울시를 체험 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	가로수 등 식재와 함께하는 거리제공	거리환경에서 시각적 혼란 최소화	보행자를 위한 수준높은 조명설계

5. 공청회 결과

- 일 시 : 2016. 7. 22(금)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의견	검토의견	비고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8월 시행 예정으로 검토	○ 도시디자인 조례와 공공디자인 진흥법 통합을 위한 정책 제언	반영
○ 시민만족감을 위한 25개 자치구 실행 계획 수립	○ 자치구별 가이드라인 운영, 실행 계획 수립 방안을 위한 세부과제 보완	반영
○ 3차 계획의 주요 이슈를 상징화하는 슬로건 개발	○ 3차 계획의 비전을 슬로건 형식으로 보완	반영
○ 서울시, 산하기관 모두 활용가능한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 서울시 통합운용이 가능한 디자인 통합 관리 매뉴얼 개발을 위한 세부과제 보완	반영
○ 시민참여형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시민참여디자인 실행 매뉴얼 개발을 위한 세부과제 보완	반영

6.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7. 검토의견

□ 제출경위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이하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¹⁾이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됨.
- 이번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은 2006년 이후 세 번째로 수립되는 것으로, 2016년 8월 12일 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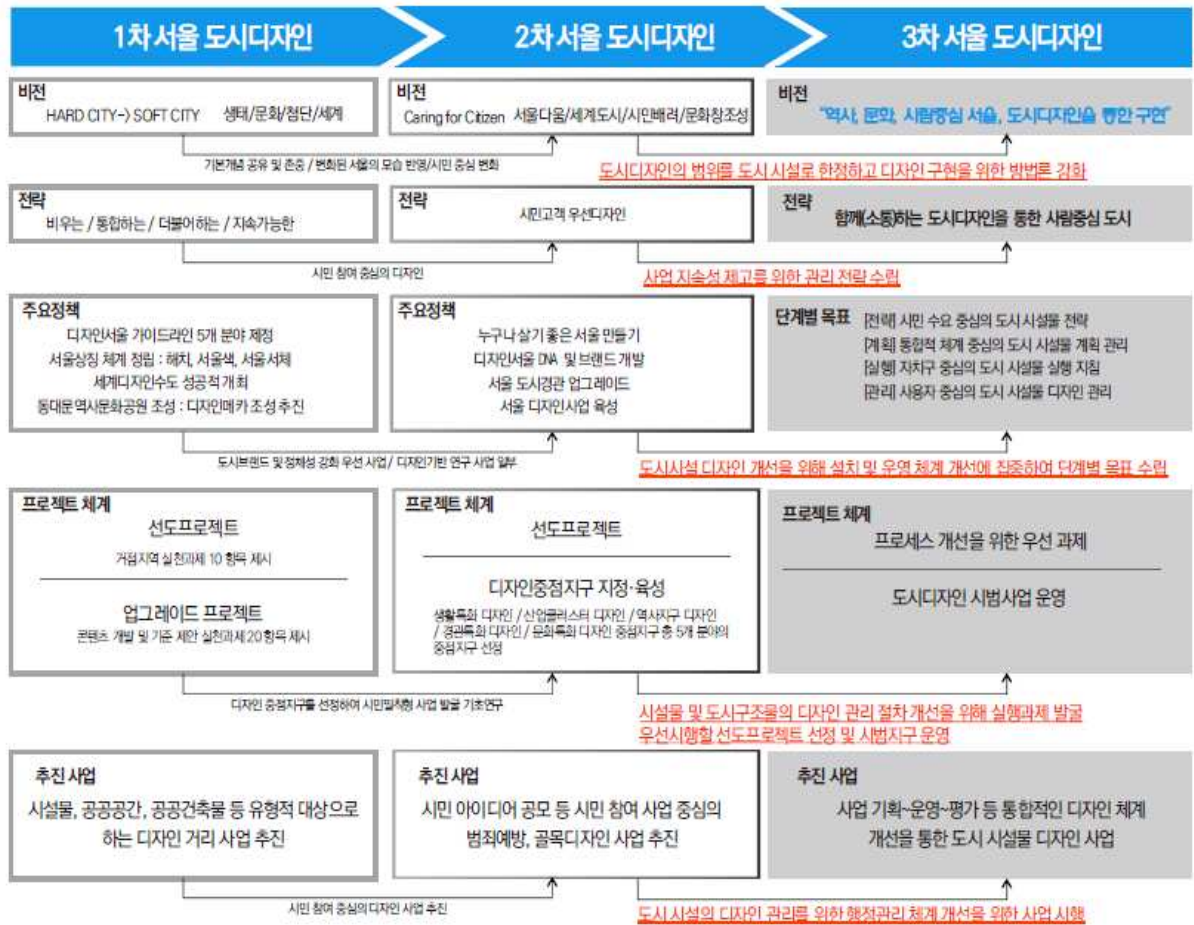
□ 주요내용 및 특징

- 이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은 서울시 전체 ‘도시디자인²⁾’의 개선·관리를 위해 수립되어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³⁾ 개최 후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재정립하였음.
-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은 내용적으로 현황분석, 비전 및 기본방향, 추진단계별 과제제시, 실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황분석에서는 서울시 도시변천사 및 관련계획·법 분석, 국외 선진사례 분석, 1·2차 기본계획 분석 등을 토대로,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의 비전을 “역사, 문화, 사람중심 서울, 도시디자인을 통한 구현”으로 설정하고, “함께(소통)하는 도시디자인을 통한 사람중심 도시”를 전략으로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단계별 목표와

1) 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7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도시디자인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물의 배치·형태·윤곽·색채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를 의미함(조례 제2조제1항).
- 3)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의무는 ‘16.3.24 조례 전부개정시 신규로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번 3차 기본계획부터 공청회를 개최하게 됨.

프로젝트 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 3차 기본계획은 앞선 1,2차 기본계획의 후속계획 차원으로 수립되었는데 기존 계획이 거시적이고 추상적·개념적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면, 3차 기본계획(안)은 개념과 비전부분에 있어 1,2차 계획내용을 연계·수용하면서 도시시설물 디자인 사업에 비중을 두었다는 특징을 지님.

□ 주요 검토사항

○ 이 기본계획(안)은 조례 전부개정('16.3.24)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적정성, 관계법령 및 계획간의 연계성, 분야별 도시디자인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추진주체, 기본계획의 위상과 성격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가. 상위법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 수립 필요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8월 4일 시행되었으며, “공공디자인”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 조성·제작·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등) 등에 대한 디자인 행위 및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제1호)

- 또한, 같은 법 제5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단위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제6조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지역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와 연계된 상위법령이 제정·시행된 것으로 파악됨⁴⁾.
- 서울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법령 제정 10년 전인 2006년 조례제정과 함께 수립·시행되어왔으나, 현재 상위법이 새롭게 제정·시행된 만큼 이에 근거한 계획 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명칭 변경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흥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하거나, 명칭은 현행을 유지하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같은 위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다만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월 23일 입법예고 되고, 6월 24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3차 서울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시기와 입법절차가 중복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계획(안)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으며, 법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역시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나. 관련법령·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 앞서 검토한바와 같이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같은 위계를 갖추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에 앞서, 현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 또는 법령에 근거한 조례의 제정에 대한 병행검토와 그에 따른 대안 제시가 필요하겠음.
- 다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대상이 “도시시설물”에 관한 것으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신규 조례 제정보다는 기존 조례의 개정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논의 및 대안제시도 필요해 보임.
 - 이 경우, 법에서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배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우수공공디자인 선정”에 관해서는 시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 등을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현행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제3항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 및 도시디자인 관련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본계획에서는 경관계획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음.
 - 이와 함께 건축기본계획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등 관련계획 및 조례와의 연계·시행방안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계획간 정합성 확보로 불필요한 행정력 소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음.

4)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조례에 근거를 둔 디자인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계획의 대상 시설이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시설물로서 유사하며, 계획내용 또한 비슷하기 때문임.

다. 1·2차 디자인서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 이 기본계획에서는 1·2차 디자인서울 사업에 대한 비교 및 각 사업별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과거 사업명을 나열하는 수준⁵⁾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각 사업별 시행결과 및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사업의 특징과 관련부서간 협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도시디자인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음.

라. 유형별·자치구별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방향 관련

- 이 기본계획에서는 2030 서울플랜 및 생활권계획 등을 고려한 권역별·유형별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권역별 도시디자인 사업 유형 및 우선순위의 지정과정 등에 대한 근거제시가 미약하고, 25개 자치구별 도시디자인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시행방안을 보완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소요 예산 편성 및 운용계획 등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필요가 있겠음⁶⁾.

마. 도시디자인 사업의 추진단계별 과제제시

- 이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서울시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실현가능한 세부과제를 제시하면서, 디자인 사업의 유지·관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에 높은 비중을 둔 “행정계획”으로서의 특성을 보임.
- 제4장 “추진단계별 과제제시⁷⁾”에서는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단계를 “[수요조사단계]→[기획단계]→[실행단계]→[관리단계]→[주민참여단계]”의 5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목표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화된 수단이나 추진주체 등의 제시는 미흡하여 행정편의적 계획에 머무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음.
- 특히, 서울시 도시디자인 프로세스 향상을 위해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단계별로 “우선과제(5항목)”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 증대와 계획의 효과를 검증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행단계]의 경우 우선과제가 선정되지 않는 등 우선과제 선정목적이 불분명하므로 전체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별로 촉매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단계별 우선과제를 안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붙임-2 참조).
- 도시디자인 사업은 각 지역별 일반 시민 및 사업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누구나 이해하고 참여가능한 정책적 목표 및 추진방향, 비전 등을 제시함과 동시에 자치구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의 목적과 위상 그리고 성격에 대해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겠음.

5) 제3차 서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 p.77~79

6) 제3차 서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 p.104~121

7) 제3차 서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 p.125~139

【붙임-1】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별표)

1. 사회기반시설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	
도시철도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 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 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시설물	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	가.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 이용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등	

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
조에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기타 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블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쉼터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야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 타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붙임-2] 추진단계별 과제제시

<단계별 목표 및 추진전략>

1	[수요조사 단계] 시민 수요 중심의 도시디자인 전략	시민 수요 बैं크의 운용	테스트베드 과정 적용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 시설물 사용평가 수집을 위한 스마트 시설물 운영 - 시민 수요조사 빅데이터 분석 연구	- 시설물 설치 전 주민 선호도 조사 수행 프로세스 개발 -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활용한 시설물편의성 개선방안 연구	- 시설물 안전 모니터링 운영단 개편 - 모니터링 운영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스템 개발
2	[기획 단계] 통합적 체계 중심의 도시디자인 사업 기획 관리	패키지형 관리 시스템	사전검토관 자문 제도	담당 컨설턴트 도입
		-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 단계별 체크리스트 운용 - 거점형 도시 구조물 및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사전 기획 단계의 디자인 검토제 운영 및 심의 기준 제시 -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내 디자인 기획 검토관 인력 운영	- 도시디자인 컨설턴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컨설턴트 인증제 도입 - 저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운영
3	[실행 단계] 자치구 중심의 도시디자인 실행 지침	자치구 기본계획 위계	상설 멘토링 시스템	특화 가이드라인 시스템
		- 자치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발	- 자치구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시 디자인 멘토링 시스템 운영 방안 연구	- 자치구 도시디자인 사업 개선 방안 연구 - 자치구별 가이드라인 운영 개선 방안 연구
4	[관리 단계] 사용자 중심의 도시디자인 사업 관리	디자인 과정 환류 체계 마련	도시 디자인 AS제도	정량적 평가 지표 적용
		- 도시디자인 사업 사후평가 체크리스트 운영	- 자치구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책임자 운영	- 자치구 지역 리더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도시디자인 사업 운영 평가지표 개발
전과정	[주민참여] 참여 중심의 도시디자인 사업 운용	개방형 협의체 구성	참여디자인 피드백	복합형 인력풀 체계 마련
		- 시민 디자인역량 강화방안 연구 - 시민 참여를 통한 사업 기획 및 유지관리 협의체 운영	- 사후 평가를 위한 사업 평가 기준 연구 - 사업 평가 기준 마련 연구	- 지역 자문단 운영 방안 연구 - 도시디자인 통합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세부과제 및 우선과제 선정>

단계	추진전략	세부과제	우선과제
단계 1. [수요조사] 시민 수요 중심의 도시디자인 전략	시민수요 बैं크의 운용을 통한 지속적인 수요 빅데이터 관리	시설물 사용평가 수집을 위한 스마트 시설물 운영 시민 수요조사 빅데이터 분석 연구	
	도시시설물의 테스트베드 과정을 통해 수요 적합가능 관리	시설물 설치 전 주민 선호도 조사수행 프로세스 개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시설물 편의성 개선 방안 연구	우선과제1
	전문적인 시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사용자 관점 내용 적용	시설물 안전 모니터링 운영단 개편 모니터링 운영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스템 개발	
단계 2. [기획] 통합적 체계 중심의 도시디자인 사업 기획 관리	디자인 기획 과정의 패키지형 관리 시스템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 단계별 체크리스트 운용 거점형 도시구조물 및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우선과제2
	사전검토관 자문 제도 운용	사전 기획 단계의 디자인 검토 의무제 운영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내 디자인 기획 검토관 인력 운영	우선과제3
	담당 도시디자인 컨설턴트를 통한 일관된 디자인 관리와 소통	도시디자인 컨설턴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발주시 도시디자인 컨설턴트 인증제 도입 도시디자인 컨설턴트 자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운영	
단계 3. [실행] 자치구 중심의 도시디자인 실행 지침	실행사업과 가이드라인 중심의 자치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위계 설정 서울시의 디자인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서울시 디자인 멘토링 시스템	자치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발 자치구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시 디자인 멘토링 시스템 운영 방안 연구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특화 가이드라인 시스템 운용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연구 자치구별 가이드라인 운영 개선 방안 연구	
	디자인 과정의 환류 체계를 위한 행정 정책 마련	도시디자인 사업 사후평가 체크리스트 운용 자치구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책임자 운영 자치구 지역 리더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우선과제4
단계 4. [관리] 사용자 중심의 도시디자인 사업 관리	디자인 과정의 환류 체계를 위한 행정 정책 마련	도시디자인 사업 사후평가 체크리스트 운용	
	도시 디자인 AS제도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체계 마련	자치구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책임자 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정량적 평가 지표에 의한 운영 관리 평가관리	자치구 지역 리더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도시디자인 사업 운영 평가 지표 개발	우선과제5
전과정 [주민참여] 참여 중심의 도시디자인 사업 운용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시 개방형 협의체 구성	시민 디자인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시민 참여를 통한 사업 기획 및 유지관리 협의체 운영 시민참여 디자인 실행 매뉴얼 개발	우선과제5
	참여 과정 이후의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참여디자인 피드백 운용	사후 평가를 위한 사업 평가 기준 연구 사업 평가 기준 마련 연구	
	시민, 전문가, 행정 등 복합형사업 검토 인력풀 체계 마련	지역 자문단 구축을 위한 우수인력 발굴 및 인력풀 유지방안 연구	

【붙임-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